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의 발전전략에 관한 고찰*

A Study on Developing Strategies of the Policy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

◁ 목 차 ▷

- | | |
|-------------------|----------------|
| 1 서론 | 5 기록관리정책의 발전전략 |
| 2 기록관리정책의 수립 요인 | 6 결론 |
| 3 기록관리정책의 개념과 범주 | <참고문헌> |
| 4 기록관리정책의 실상과 문제점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정책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확보,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촉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 기록관리정책 주변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요어 : 기록관리, 정보정책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policy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into methods in the field of policy science.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have been examined in relation to carrying ou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all public agencies in Korea. Based upon various analyse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derives some effective strategies on the development in the policy taken the view of establishing the appropriateness between goals and measures of the policy, promoting mutu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of the policy, putting in order the system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ing circumstances of the policy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Keywords :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formation policy

* 이 논문은 2001-2002학년도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특별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chongju.ac.kr)

1 서론

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이며, 기록은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기록은 새로운 기록을 생산하는 밑거름으로 철저히 보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기록일지라도 그 가치에 관계없이 제반 법규 등에 근거하여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한 기록은 때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 보존하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진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국가들간 영토 분쟁의 조정, 일제치하 친일인사의 조사 작업, 각종 비리 사건의 조사 과정 등에서 그러한 예들을 접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전적을 좋아하고 이를 소중하게 수집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 후세를 위한 사료나 교훈으로 전승시켜 오는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음을 많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예전의 좋은 전통을 버리고,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최근까지 '기록이 없는 망각의 제국'이란 신문기사 제목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기록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계레21, 2001.2.27).

그 동안 우리나라도 정부기관 기록물의 기록·정리·보존시스템 등을 제대로 확립하여 운영하고자 부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부터는 '기록물관리법'으로 표기함)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뒤이어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법규의 마련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과 관련된 모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찬란하였던 우리의 기록문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록관리정책과 관련하여 각 학문 분야마다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정책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한세억 1996, 123-136)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시행중인 기록물관리법의 실상을 살펴 본 후 그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기록관리정책의 수립 요인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정책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정치·사회·문화 등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정책에 관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의 성과가 기록문화의 정착과 민주사회 구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담하기 위해 현대식 시설을 갖춘 정부기록보존소가 주무 행정부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법규적 기반도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의 수립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대 국민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민주화 추진과 함께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이 추진해야 할 정치적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성, 그리고 국가 행정의 쇄신 및 투명성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각종 사건별 주요 공공 기록물의 무단파기 의혹이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록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셋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전의 훌륭한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기록유산을 보전하며, 이를 활용하고 유통시킬 필요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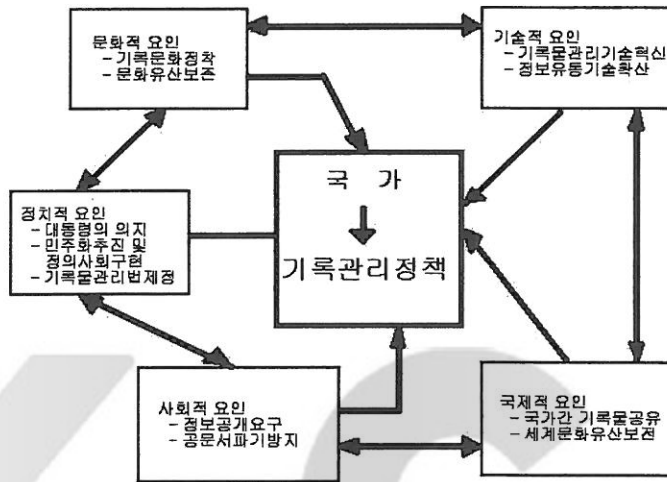
넷째, 기술적 측면에서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술의 혁신,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이 가능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대정부 정보공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국제기구들이 국가별 기록물의 공유를 위한 정리기술의 표준화, 관리방안의 현대화 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은 다음의 <그림 1>에서(한세억 1996, 125)와 같이 정

치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국제적 요인들이 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림 1> 국가 기록관리정책의 수립 요인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화 추진을 위해 국가 기록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가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은 정부조직으로서 정부기록보존소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법규를 제정하면서 수립된 것이다.

위의 그림에 나타나는 각각의 요인들은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국가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 정치적 요인이 다른 사회적·문화적·기술적·국제적 요인에 비해 기록관리정책의 수립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록관리정책의 개념과 범주

우리는 기록문화의 정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록관리 현황을 하나의 중요한 정책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및 보존, 규제와 촉진, 기록의 표준화와 전산화 등 수많은 기록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관심을 받으며 정책의제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구와 구별된다. 이처럼 정책창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정책문제로 인해 정책은 동태적이며 변동을 추구하는 성향을 띠며 변화과정을 거쳐간다.

오늘날 기록유산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록관리정책은 그 개념의 정의와 범주를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록관리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록관리정책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를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기록문화 정착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기록관리정책은 각 분야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니는 정책으로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때 기록물의 수집, 정리, 보존,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록관리정책을 국가차원의 기록문화 정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정부가 기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유통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촉진적이고 규제적인 계획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정책은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주체는 정부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기록관리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영위되면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와 통제를 받아 왔다. 특히 국가기록물의 관리는 정치적 의미와 국가보호 전략의 맥락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의사로 결정된 정책을 기록관리기관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기록관리정책이다.

둘째, 기록관리정책은 기록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동적 과정으로 이해됨으로써 사회 설계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 즉, 기록관리정책은 정부가 장차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기록문화의 정착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셋째, 기록관리정책은 정부가 기록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기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관리 기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록물의 관리 기반은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하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법규와 제도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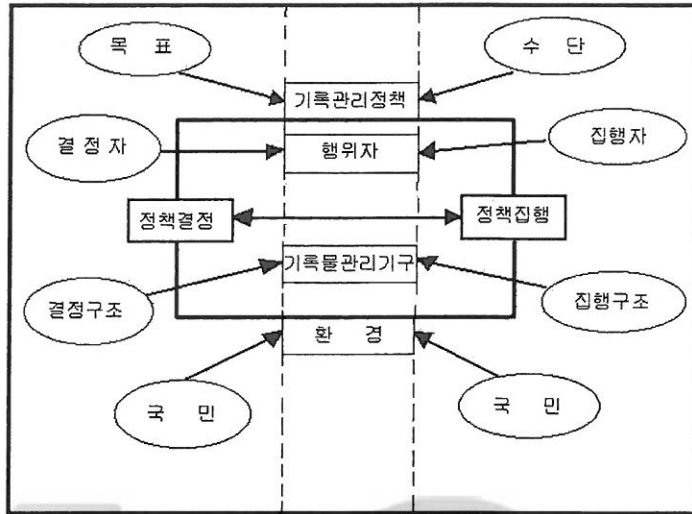
넷째, 기록관리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촉진적이며 규제적인 활동이다. 즉, 정책은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와 과정을 지도하는 일련의 원칙과 전략 및 계획 등을 포함하며 촉진적이고 규제적인 작용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촉진 활동에는 확산·지원·진흥·육성 등이 포함되며, 규제적 활동에는 지도·보호·제한 등에 관한 법률·명령·규칙 등이 해당된다.

4 기록관리정책의 실상과 문제점

국가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록문화의 정착이 새로운 민주사회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록문화의 정착을 위해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의 확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가차원의 기록관리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기록문화 정착을 위해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기록관리정책에 대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에 관한 논의와 연구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연계하여 다룬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이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어느 한편에 치중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들도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법률적, 정치학, 역사학적, 행정학적, 문헌정보학적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기록관리정책의 형성과 집행간의 연계를 둘러싸고 정책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록관리정책을 대상으로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한세억 1996, 128)에 적용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기록관리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연계성



기록관리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변화된 정책목표는 다시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책으로서 기록관리정책, 행위자, 추진체계로서의 기록물관리기구, 환경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즉, (1)정책목표와 수단간의 현실적인 적절성, (2)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관계, (3)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4)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4.1 정책목표와 수단의 비적절성

국가의 기록관리는 국정운영의 근거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정 감시기능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후대의 기록 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민족사의 맥을 보존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민의 신분, 재산권 증빙, 기록정보의 제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술연구자료로 제공하여 학계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규·기구·인력·기술 등이 아직까지는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 등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의 비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법규의 제정 이전보다는 효율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기록관리의 기본적인 사명인 국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제 3의 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이 핵심인 점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보존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법규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1997년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 생산 현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각급 기관이 연간 생산하는 영구보존 문서량은 약 18만건이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은 131명으로서 연간 처리능력이 약 5만건에 불과한 실정이다(김선영 1999. 34). 또한 각급 기관에서도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선영 1999, 32).

셋째, 기록물의 전산화 등 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전산관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기록물이 생산되면 등록대장·발송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기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전산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첨단 정보사회에 걸맞는 기록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전자정부의 구현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록정보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4.2 정책 참여자간 갈등의 표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공공기관·국민 모두의 참여가 요망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행정학·법학·역사학·문헌정보학 등 유관 학문분야의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주관 행정부처가 정책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 각 정부부처·공공기관은 집행자로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은 감시자이면서 이용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조직 및 기관은 각기 특수한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기록물관리에 문제점을 가져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자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고, 업무 추진이 지연되기도 한다. 그 갈등들은 크게 (1)정책 집행자간 갈등, (2)정책 집행자와 감시자인 이용자간 갈등, (3)감시자인 이용자 집단간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정책 집행자간의 갈등은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하고 폐기할 수 있는 예외 기관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을 집행할 모든 기관들이 기록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였지만, 자기 기관에 대해서는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김선영 1999, 40).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한 의의가 상당부분 퇴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 집행자와 감시자인 이용자간의 갈등은 이용자인 국민의 국가 기록관리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 집행자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가운데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록보존의 기본적인 사명은 국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제3의 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국가차원의 기록관리정책에 대한 감시자인 이용자 집단 사이의 갈등은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근거로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과업에서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기록물과 관련된 몇몇 이익집단 사이에 상호협력보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관리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감시자인 이용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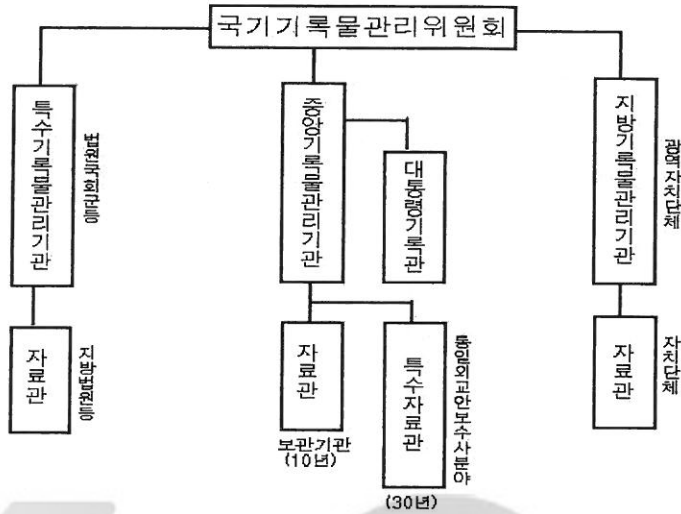
국가의 기록문화 정착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증지를 모으고 실천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련 학문 분야 또는 집단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별도의 학회나 협회 등의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활동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281-284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1, <http://www.rikar.org/kongji/kaas03.htm>).

4.3 기록관리 체계의 모호성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물관리기구를 전문관리기관, 자료관,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제2조 5항에 의하면 전문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 중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상기 기관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공공기관의 자료관 및 통일, 외교, 수사 분야 공공기관의 특수자료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 기록관리 체계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조선일보, 1998.12.29) 일원화되지 못하고 다원화 체제를 갖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첫째, 기록물 관련 법규에 나타나는 기록물관리기구들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법규의 집행이나 적용에 있어서 소속기관 중심으로 해석하고 운영하여 일관성 있는 기록관리정책의 결정이나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관리법 제5장 제26조에 의거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전체의 기록보존정책 수립, 입법·사법·행정부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원칙정립, 국가기록물 지정, 공개연한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원회 조직은 사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이지 의결 또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각종 위원회는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 면책사유를 만들어 가는 조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공공기록물 수집 및 보존 체계



둘째, 기록물 관련 법규는 제정만 한다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조직 속성상 소속기관의 기관장 직급은 그 기관의 조직·인력·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은 국가의 전반적인 기록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장 직급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장급(2급)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직급의 기관장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가 그 규모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다른 기록물관리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기구들이 전반적인 기록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부처나 공공기관 산하 유사 기구들과의 사이에 국가 기록물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기록관리기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은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동일한 면과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김정하 2000, 194-204). 이 외에 정부기록보존소와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과의 경우에도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그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그리 쉽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4.4 기록관리정책 집행환경의 미흡

국가의 기록물관리 정책은 그 속성상 민주주의의 성숙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법 제정의 필요성도 문민정부시기에 강하게 제기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한 정책사안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른바 '5공 청문회' 등 숱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주요 기록물의 무단파기가 확인되고, 그리고 정권교체와 IMF사태를 통해 관련 문서의 은폐 및 파기의혹 등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록물 관련 법규를 제정할 필요성이 증폭된 것이다(남효채 2001, 31). 이에 따라 기록물 관련 법규가 정부 주무기관의 노력과 기록 관련 학계 및 국민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정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록관리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여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록문화를 정착하고 기록유산을 보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록물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관련 법규를 제정한 이후부터는 정부기록보존소 차원으로 국한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 폐기할 수 있는 기관들의 상대적 무관심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의 정부조직 체계상 그리 높지 않은 위상으로 말미암아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 정부가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가운데 '옷 로비 의혹 사건' 등 잇달아 발생한 문서유출사건으로 빛이 바랜 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는 종전과 다름없이 총무 또는 서무담당의 후순위 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김재순 2000, 7), 또한 각급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가운데 자체폐기심의위원회에서 폐기하여도 좋다고 판단되는 기록물들은 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최근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한상완 등 2001, 149).

셋째, 국가 기록물관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인 관련 법규의 마련과 함께 충분한 전문인력의 충원과 예산의 확보 및 시설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들이나 새로운 법규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들이 가급적 많은 권한을 갖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기록문화의 사회적 정착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록관리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시자인 이용자로서 국민은 그 결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는 이렇다할 관심을 갖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가 스스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5 기록관리정책의 발전전략

5.1 정책의 기본구도

기록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열악한 기록문화를 훌륭하게 정착시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차원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록정보의 내용은 인위적인 수정이나 은폐 또는 무단으로 폐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민들은 여러 수단을 통해 그러한 기록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전략적 정책에서 민간의 예상과 행동이 정책결정을 좌우하는 측면이 많아짐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정책

에서 결정자와 집행자 그리고 감시자로서 이용자인 국민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정책의 보편적인 추세는 일방적인 공급위주에서 다양한 수요중심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는 기존 공급위주의 전문화에서 탈피하여 이용자 위주의 복합 또는 통합서비스 개념이 추구되면서 통합적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정책도 이용자인 국민들을 고려하여 정책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록물 관련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면 소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의 기본구도는 기록물의 범주,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정책집행의 유형, 기록관리의 체계 등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재조정하고 정책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주를 효율성 위주의 양적 확장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질적 심화 방향으로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물관리 및 기록정보의 제공은 생산자 중심의 공급위주에서 이용자 중심의 수요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기록물의 관리와 기록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인 국민이 원하는 기록물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기록관리정책은 지도·감독·관리지향의 정부주도로부터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 유형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정책집행 기관의 기관장이 정부 조직상 그리 높지 않은 직급일 경우에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자료관 등의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기록물 내용의 확보와 제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지향해야 하며,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존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분산적 체계보다는 국가 전체차원에서 통합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5.2 정책의 발전전략

5.2.1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확보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도·기구·인력 등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관리기관들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내에서 중요한 기구로 인정받

으면서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실상과 문제점들은 다각적인 노력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록물 관련 법규의 제정과 시행에 앞서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기록물관리 체계는 3권 분립의 정신이나 소위 막강한 힘을 지닌 부처의 논리에 따라 분산형 체계를 갖게 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그 체계를 감시자이면서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감시장치를 갖춘 통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부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 방침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으면 기본적인 정책수단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수단들로서 기록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첨단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록물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의 모든 기록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5.2.2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촉진

국가 기록물관리를 위한 정책참여자 사이의 갈등은 전술한 정책집행자간 갈등, 정책 집행자와 이용자간 갈등, 이용자 집단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다음과 같이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는 이용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사업목표와 방향설정은 물론 세부업무 추진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 관련 법규에서 국민 또는 이용자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정책참여자는 경제적 합리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유연한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 기록관리 환경이 기존의 단순한 보존 개념에서 다양한 이용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기보다는 수평적인 계열화를 통해 관련 부문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기록물의 응용부문은 각각 부문별로 장점

을 지니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과의 상호 협력을 진작시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가의 기록물관리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참여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복잡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책 집행의 연기 또는 불순응을 가져오거나 기록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함께 합의를 이루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5.2.3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

우리나라의 국가 기록물관리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3권 분립의 정신과 특정 부처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산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관리 체계는 앞서 지적한대로 국민적 의혹의 불신을 줄이거나, 지지 또는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부적절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국가의 기록물관리는 기본적으로 통합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떠한 외압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과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제하고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1)감시자이면서 이용자인 국민의 요구 사항 충족, (2)기록물 및 업무의 중복 방지, (3)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국가의 기록관리 체계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전자의 기관은 입법·사법·행정부 및 대통령기록관의 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각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설치하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관련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한다. 그 외 기록관리기관의 인정은 국민적 관심이나 업무의 중복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둘째, 기록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주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록물관리법의 시행 이전에도 정부기록보존소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3배가 넘는 기록물이 행정부 소속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기록물’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폭증 및 공간문제의 발생은 예견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사기업체나 개인의 기록물까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록물’의 범주를 공문서로 한정하여 보다 더 철저하게 생산단계에서부터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테면, 공문서 외에 각종 도서나 간행물은 수집 즉시 도서관으로 이관하고 기록만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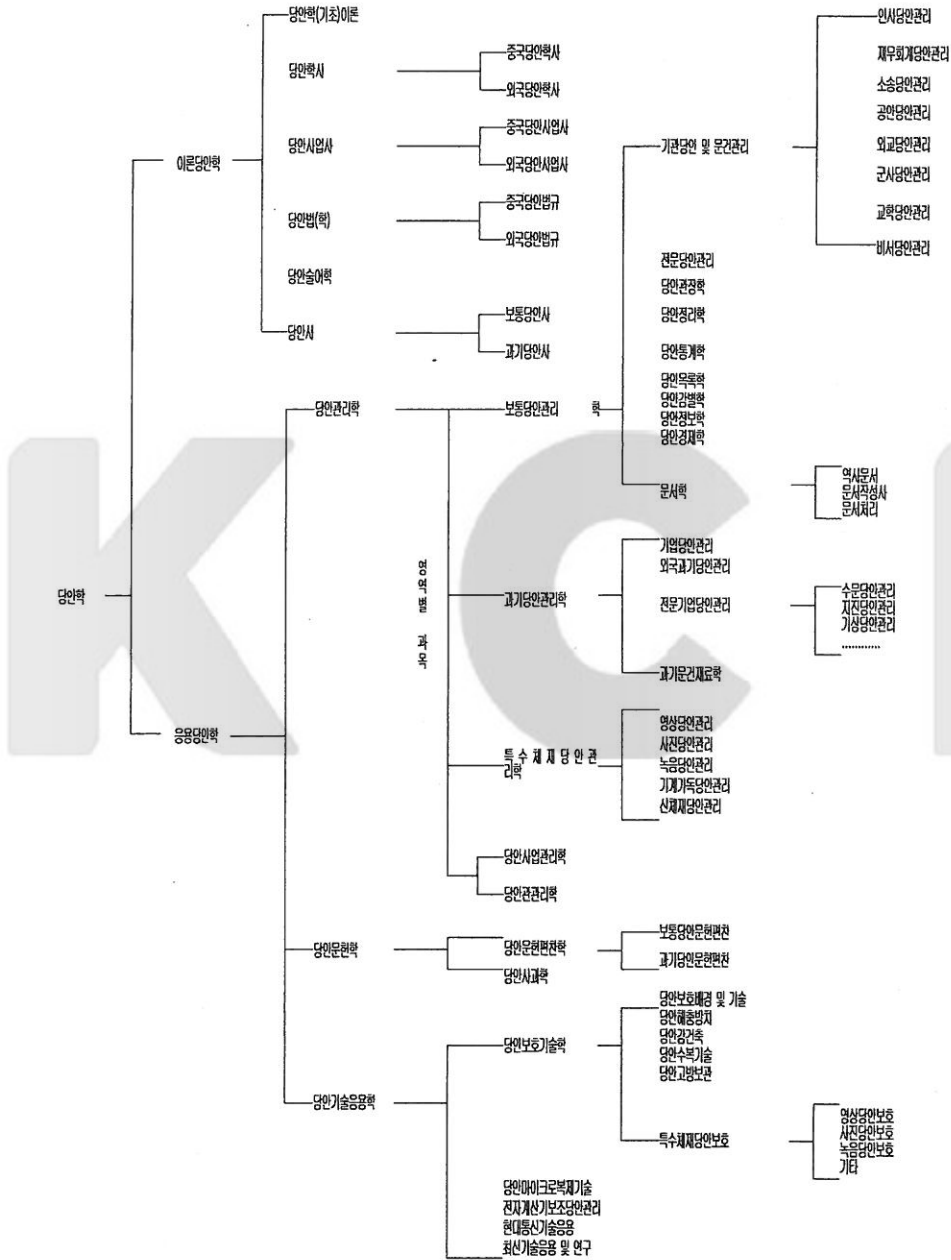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구의 최하위 단위인 각급 기관의 자료관 설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동 법의 규정에 의하면 2010년까지 대략 1,200여 개관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료관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지태 2000, 51-52). 이러한 자료관은 기존의 문서관리부서와 행정자료실을 반드시 통폐합하고, 기타 유관 부서도 일원화하여 총무(서무)부서 또는 기획관리부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0, 5). 이 과정에서 현재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서고 등 시설현황은 공간 확보 및 시설수준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자료관은 공간 확보나 시설수준을 고려할 때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회장에서 주제발표자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에 해당지역 자료관이 공공도서관에 공간만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기록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高山正也, “日本における記録管理學の發展現況と記録管理學會の役割”,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서울: 연세대 상남경영관, 2000.7.4) 주제발표 및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김정하,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제2회 학술발표회(서울: 연세대 상남경영관, 2000.11.18) 주제발표에서 질문을 통해 확인함.>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가장 오랜 당안학(기록관리학) 교육의 역사를 지닌 인민대학교에서는 당안관(자료관)을 대학도서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5.2.4 기록관리정책 주변환경의 개선

국가적으로 기록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를 최소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정책 결정자나 집행자가 관련 법규의 제정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해집단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각종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면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책의 집행 자체가

<그림 4> 중국의 당안학(기록관리학) 교과과정 체계



어려울 수 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확보한 것이지만, 그 틀을 고정된 범규적 장치로 여기지 말고 계속 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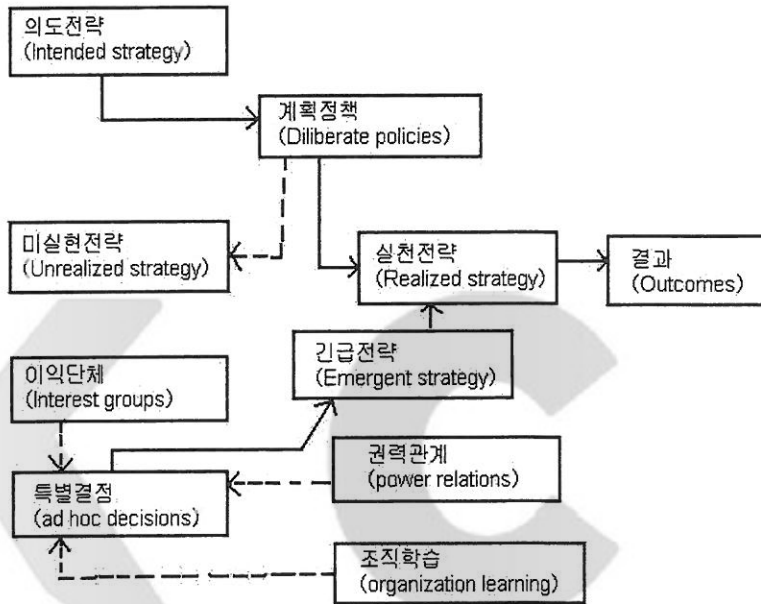
우선 정부기록보존소는 앞장서서 국가의 기록물관리가 기록물 관련 범규의 제정 이후 국가적 차원의 관심으로부터 정부기록보존소 차원으로 국한된 국민의 관심을 고양해야 한다. 또한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물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물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 발표된 논문들이 여러 편 있다(김태수 1999, 43-63; 김용원 2000, 83-107; 김정하 2001, 201-230; 최정태 2000, 1-15 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므로 동양권에서 중국이나 일본, 서양권 가운데 미국과 영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최근 들어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교과과정을 고찰한 후 우리의 실정을 고려한 양성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은 우리의 현실과 함께 중국의 당안학 교과과정에서 사회주의 관련 과목 등(人民大學 1999, 156-164)을 제외한 <그림 4>와 같은 기록관리학 체계(國家檔案局 1995, 181-183)를 바탕으로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등에서 21세기를 지향하면서 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Bruce W. Dearstyne 1999, 134-141)을 참조하여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기록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실천이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하게 수립한 의도된 전략 일지라도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든 정책과 전략들은 수없이 많은 수정과 변화 과정을 거쳐 실천전략이 마련되고 이에 의해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요인 및 단계별 과정은 다음의 <그림 5>와 같다(Ian Rowlands ed. 1997, 184). 이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정책은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으로 의도하는 전략에 따라 계획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천전략을 거쳐 그 결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조정단계를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한 조정단계에는 기록물관리기구의 자체적인 조직학습,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권력관계 설정, 다양한 이익단체의 이해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림 5> 정책과 전략의 수립 및 집행



넷째, 정부기록보존소를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구는 행정 부처간 이기주의를 떠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과 공간이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전문인력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물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용적인 서비스 위주로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6 결 론

기록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자료를 지칭한다. 그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공익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자료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인 기록은 국민 개인은 물론 모든 활동 주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기록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보전 가치가 높은 기록의 일실을 방지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이러한 기록에 대해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록물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정부주도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 및 정책을 단기간에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일나무에서 잔가지를 치지 않거나 오히려 굵은 가지를 자르고 잔가지만 남긴 채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업무는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기록관리기관이라는 선박, 기록물 관련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그물, 기록전문가로 볼 수 있는 어부, 기록물이랄 수 있는 물고기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 어부와 그물을 실을 선박은 물론이고 훈련받은 어부,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된 크기의 구멍을 가진 그물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는 달리 물고기를 길러서 잡는 양식업에서와 같이 중요한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제시한 발전방안이 실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어부를 양성하며, 그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물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의 기록관리정책의 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록물관리기구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 이해야 국가서 체계적 관리”. 조선일보, 1998. 12. 29.
- “기록이 없는 ‘망각의 제국’”. 한계레12, 2001. 2. 27.
- 김선영. 1999. “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기록보존제도의 확립”. 기록보존과 관리, 통권 제4호 (1999. 12), 33-41.
- 김선영.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전망”. 한국기록보존협회 세미나. (서울 : 연세대 상남경영관, 1999.7.9), 31-41.
- 김재순. 2000. “기록물관리법 시행현황과 정책방향”. 기록보존, 제13호(2000), 7-17.
- 김용원. 2000.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7. 국제학술대회. (서울 : 연세대 상남경영관, 2000.7.4), 83-107.
- 김정하. 2000. “현대 기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기록관리와 정보학, 기록보존소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1호 (2000. 3), 173-206.
- 김정하. 2001.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01. 3), 201-230.
- 김태수. 1999. “기록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한국기록보존협회 세미나.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관, 1999.7.9), 43-63.
- 남효채. 2001.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01. 3), 19-35.
- “문서유출 공화국”. 경향신문, 1999. 11. 26.
- <http://www.rikar.org/journal/culture/outflowdoc.htm>.
- 박지태. 2000. “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보존, 제13호(2000), 49-79.
- 최정태. 2000. “기록관리학과 기록전문가의 정립”. 한국기록관리학회 제2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 : 연세대 상남경영관, 2000.11.18), 1-15.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한국기록관리학회 휘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01. 3), 281-191.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1. “한국기록학회 안내문”. <http://www.rikar.org/kongji/kaas03>.

htm.

- 한상완·김성수·윤대현. 2001.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의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01. 3), 131-152.
- 한세익. 1996. “우리나라 정보통신기반구축의 발전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7집 (1996. 12), 123-136.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0.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법령에 의한 자료관 설치·운영 지침. 대전: 동 보존소, 2000. 5.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0.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및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설치지침. 대전: 동 보존소, 2000. 7.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1998. 외국의 기록보존제도. 대전: 동 보존소.
- 高山正也. 2000. “日本における記録管理學の發展現況と記録管理學會の役割”.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관, 2000.7.4), 55-81.
- 國家檔案局 編. 1995. 「檔案學概述」. 北京: 檔案出版社.
- 人民大學. 1999. 「檔案學專業教學方案」. 北京: 人民大學.
- Bruce W. Dearstyne and Diane L. Barlow. 1999. “Archive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Creating a Dynamic Curriculum for the Next Centur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0 no.3 (Summer, 1999), 134-141.
- Ian Rowlands ed. 1997. *Undesatanding Information Policy*. London: Bowker-Saur.

КСІ